

방송통신위원회 속기록

회의명 : 제51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회의일시 : 2021. 11. 24.(수) 10:00

장 소 : 방송통신위원회 4층 회의실

참석위원 : 한상혁 위 원 장
김 현 부위원장
김효재 상임위원
김창룡 상임위원
안형환 상임위원 (5인)

불참위원 : 없 음

제51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속기록

【 10시 00분 개회 】

1. 성원보고

- 한상혁 위원장
 - 성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희수 의안·정책관리팀장
 - 재적위원 전원이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2. 국기에 대한 경례

- 권희수 의안·정책관리팀장
 -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서 전면의 국기를 향해 주십시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3. 개회선언

- 한상혁 위원장
 - 2021년도 제51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4. 전차회의록 확인

- 한상혁 위원장
 - 제50차 회의의 회의록과 속기록을 확인하고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된 회의록과 속기록에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의하신 대로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5. 회의공개 여부 결정

○ 한상혁 위원장

- 오늘 회의에는 <의결안건> 1건과 <보고안건> 1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이 안건을 공개로 심의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6. 의결사항

가.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재승인 조건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에 관한 건 (2021-51-158~160)

○ 한상혁 위원장

- <의결안건 가>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재승인 조건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에 관한 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성철 방송지원정책과장

- 보고드리겠습니다.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재승인 조건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에 관한 건입니다. 먼저 의결주문입니다.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재승인 조건을 위반한 주식회사 채널에이, 제이티비씨 주식회사, 주식회사 매일방송에 대하여 별지와 같이 시정할 것을 명한다’입니다. 두 번째 제안 이유입니다. 방송법 제17조에 따라 재승인 시 부가한 조건을 위반한 주식회사 채널에이, 제이티비씨 주식회사, 주식회사 매일방송(이하 ‘중편PP’라 한다)에 대해 방송법 제99조제1항제2호에 따른 행정처분을 심의·의결하기 위함입니다. 세부적인 경과 사항입니다. 작년 4월과 11월에 중편PP 재승인 의결 및 재승인 조건이 부가되었습니다. ‘20년 4월부터 ‘21년 8월까지 중편PP 재승인 조건(협찬사실 고지)에 대해서 이행여부를 점검하였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방송프로그램 모니터링 결과와 사업자 제출 실적 간 상이한 부분이 있는지 매월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1년 10월 19일 (주)채널에이, 제이티비씨(주), (주)매일방송에 대해 시정명령 사전통지를 하였습니다. 11월 1일 해당 사로부터 사전통지에 대한 의결제출을 받은 바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재승인조건 위반사항 및 피심인 의견입니다. 먼저 재승인 조건 위반사항입니다. 중편PP는 재승인 조건에 따라 협찬을 받은 프로그램에서 협찬주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직접적인 효과나 효능을 다루는 경우 시청자들이 알 수 있도록 협찬 받은 사실을 해당 프로그램의 시작과 종료 시점을 포함하여 최소 3회 이상 고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채널에이는 ‘20년 10월 6일 방영된 ‘특별기획-황혼의 불청객 관절염을 잡아라’라는 프로그램에서 협찬 받은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고, ‘20년 11월 5일 방영된 ‘나는 몸신이다’라는 프로그램에서 협찬 받은 사실을 미고지하였습니다. 제이티비씨(주)는 ‘21년 1월 4일 방영된 ‘인생토크쇼 터닝포인트’ 프로그램에서 협찬 받은 사실을 미고지하였습니다. (주)매일방송은 ‘21년 5월 중 방영된 3개 프로그램(‘21년 5월 16일 ‘대한민국 1% 건강청문회’, ‘21년 5월 22일 ‘특집다큐 H-수면연장의 열쇠, 장속 유익균을 늘려라’, ‘21년 5월 23일 ‘대한민국 1% 건강청문회’)에서 자막을 2회만 고지하였고, ‘21년 6월 25일 방영된

‘천기누설’ 프로그램에서 자막을 2회만 고지하였습니다. 또한 ‘21년 7월 2일 방영된 ‘천기누설 스페셜’ 프로그램에서 자막을 1회만 고지하였으며, ‘21년 7월 27일 방영된 ‘특집다큐 H-황혼 건강의 골든타임을 잡아라’ 프로그램에서는 협찬 받은 사실을 미고지하였습니다. 관련 재승인 조건은 박스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피심인 의견입니다. 먼저 (주)채널에이는 해당 협찬사실 고지 자막 누락은 회사의 불찰로 인해 발생한 사건이나 종합적인 측면에서 사안을 검토해 주시기를 희망한다는 의견을 보내왔습니다. (주)채널에이는 ‘20년 협찬사실 고지 자막 누락 상황이 발생하여 내부 조사를 철저히 진행하였고, 근무경력이 짧은 담당자의 실수임을 확인하였으며, VOD 영상에 대해서는 자막이 정상적으로 표기되도록 조치하였다고 보고하였습니다. 프로그램 담당자에게 협찬 고지와 관련된 중요성 등을 고지하였고, 복수의 담당자들이 모니터링하고 심의실에서도 확인하는 절차를 도입하였다는 의견을 보내왔습니다. 제이티비씨(주)에서는 해당 협찬사실 고지 자막 누락은 ‘20년 10월 16일 본방송된 프로그램이 ‘21년 1월 4일 재방송되는 과정에서 담당자의 실수로 발생하였으며, 동 고지 누락 사실을 인지한 후 시청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프로그램에 자막을 적용하여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였다고 보고해 왔습니다. 한편, 위원회의 통상적인 재승인 이행실적 점검 주기(연간단위)와 다른 점에서 이번 ‘시정명령’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보내왔습니다. 제이티비씨(주)의 위반시점은 2021년도로 타 사의 위반시점과 상이하고 이행실적 점검 없이 연(年)중에 시정명령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절차적 문제가 내포되어 있으므로 다음 재승인 조건 이행실적 점검이 실시된 이후로 시정명령이 유예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보내왔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주)매일방송의 의견입니다. 당사는 협찬사실 고지를 꾸준히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제작진의 기술적인 실수로 몇 차례 자막고지가 누락되었고 향후 같은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내부 검수시스템을 2중, 3중 강화하였다는 의견을 보내왔습니다. 또한, 협찬고지 관련 실무자 전체 교육을 실시하고 각종 회의를 통해 협찬고지 3회 준수를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제작진의 실수가 재발되지 않도록 담당자 내부 징계 등을 실시하였으며, 동 위반사항이 매우 엄중한 사안임을 재차 강조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새롭게 부여된 재승인 조건에 적용해 가는 과정 중에 발생한 실수에 대해 위원회의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다섯 번째, 검토 의견입니다. 종편 PP가 협찬을 받아 제작된 프로그램에서 협찬주가 판매하는 상품 등의 효과 또는 효능을 직접적으로 다루는 경우, 협찬 받은 사실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전달함으로써 시청자의 오인을 예방하는 등 시청자 권익보호를 위해, 위원회는 ‘20년도 종편PP 재승인 시 해당 프로그램에서 협찬 받은 사실을 최소 3회 이상 고지해야 하는 재승인 조건을 처음으로 부가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종편PP는 재승인을 받은 이후 건강정보 프로그램 등이 협찬을 받아 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조건에 따른 고지(최소 3회 이상)를 전혀 하지 않거나 1회 또는 2회의 고지만 하는 등 조건 위반행위가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방송시장에서 종편PP와 홈쇼핑 간 연계편성이 이루어지고 있어 시청자들에게 협찬사실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제공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5페이지입니다. 이러한 협찬사실 고지위반은 프로그램에서 제공된 정보에 대한 시청자의 오인 가능성을 높일 우려가 있어 바로 시정되지 않으면 침해되는 공익이 사업자의 사익보다 현저히 커질 수 있으며, 향후 조건을 이행해야 하는 재승인 기간 내에 조건 위반행위가 재차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종편PP에 대해 성실한 이행을 촉구하고 관련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시정명령 부과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별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21-51-158호, 주식회사 채널에이는 협찬사실 고지 및 고지횟수

준수 등 향후 재승인 조건 9번을 위반하지 않도록 성실히 이행하고, 이를 위한 업무 개선 방안을 시정명령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것을 명한다. 의안번호 제2021-51-159호, 제이티비씨 주식회사는 협찬사실 고지 고지횟수 준수 등 향후 재승인 조건 5번을 위반하지 않도록 성실히 이행하고, 이를 위한 업무 개선방안을 시정명령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것을 명한다. 의안번호 제 2021-51-160호, 주식회사 매일방송은 협찬사실 고지 및 고지횟수 준수 등 향후 재승인 조건 6번을 위반하지 않도록 성실히 이행하고, 이를 위한 업무 개선방안을 시정명령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것을 명한다입니다. 다시 5페이지로 돌아가서, 향후 계획입니다. 오늘 의결해 주시면 피심인에게 시정명령을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붙임>은 피심인의 제출의견, 관련 법령이 붙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한상혁 위원장**

-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질의사항이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재 위원님 말씀 하십시오.

○ **김효재 상임위원**

- JTBC의 이의제기가 있었지요?

○ **진성철 방송지원정책과장**

- 예.

○ **김효재 상임위원**

- 이것이 어려워져서 잘 모르겠는데 절차상 무슨 문제가 있다는 것이지요?

○ **진성철 방송지원정책과장**

- 통상 저희가 재승인 조건이 부가되고 나서 이행점검은 1년 또는 2년 단위로 하게 되어 있긴 합니다. 그런데 JTBC 입장에서는 작년에 재승인하면서 700점을 넘었기 때문에 2년 단위로 이행실적을 점검해야 하기 때문에 JTBC 입장에서는 작년 11월과 올해 것을 내년에 시정 명령을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 **김효재 상임위원**

- 이것은 올해 시정명령을 발동해서는 안 되고 이것은 묵혀 두었다가 내년도에 다른 점검 건과 합쳐서 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하면 JTBC에 어떤 실익이 있습니까?

○ **진성철 방송지원정책과장**

- 실익에 대한 부분은 JTBC가 알 수 있지, 행정청에서는 그 실익에 대한 부분을 판단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 **김효재 상임위원**

- 우리가 처분하면 JTBC 쪽에 어떤 불이익이 있습니까? 이렇게 처분함으로써 JTBC 쪽에 어떤

불이익이 돌아갑니까?

○ 양한열 방송정책국장

- 방송평가에서 매년 점검했을 때와 그다음에 월단위로 점검하는 점검주기에 따라, 시정명령 횟수에 따라 방송평가점수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저희도 방송평가나 재승인 심사 시에 일률적으로 하지 않고 합리적인 방안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 김효재 상임위원

- JTBC가 이렇게 이의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의 입장에서는 그 이의를 받아들일 수 없고, 나중에 방송평가할 때 이런 것들을 고려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 양한열 방송정책국장

- 그렇지요. 그러니까 시청자 이익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이것이 1년, 2년 동안 계속 지속되는 것은 맞지 않기 때문에 시정명령의 취지가 원래 그런 취지이고, 전체적인 재허가나 재승인 점검은 매달, 매주 할 수 없으니까 1년 단위로 하지만 그리고 그에 따른 시정명령을 하지만 최종적으로 평가할 때 예를 들면 1년에 10회를 위반한 사업자가 있을 수 있고, 한 번을 위반한 사업자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평가도 마찬가지로입니다만 여러 번 행위를 했을 때와 한 번 행위를 했을 때 차이가 나니까 재승인 심사에서는 거기에 맞게 평가할 수 있도록 일부분 필요한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 진성철 방송지원정책과장

- 추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시정명령할 때 채널A 같은 경우 미고지가 2건 있었고, JTBC는 1건 그리고 MBN은 미고지 1건, 횡수위반 5건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같이 시정명령을 내리다 보니 각사 간 형평성 논란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보완할 생각이나면 작년에 저희가 재승인하면서 심사항목 배점 중 재승인 시 부가된 조건 권고 이행 여부 등에 대해 정성평가로 70점이 배점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재승인할 때는 그것이 70점이 될지 더 늘어날지 그것은 나중에 심사위원회에서 판단해야겠지만, 이런 시정명령이 나갔다고 하더라도 위반횟수가 2건 위반했느냐, 5건 위반했느냐에 따라 평가점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반영되어서 형평성 부분들은 조정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조건에 대한 부분의 이행실적 점검을 1년 또는 2년 단위로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재승인할 때 사업자들이 자기들이 준수하겠다는 계획들을 내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 행정청 입장에서는 이것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그 부분이 판단이 안 됩니다. 그래서 1년간 또는 2년간 이행실적 점검을 통해 회사에서 제출한 실적들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이행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번 건들은 사업자들이 매달 이런 실적들을 저희에게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반 건이 나타나게 되면 행정청도 알고 사업자들 본인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위반행위들이 이행실적 점검 1년, 2년 단위로 했었을 때 수없이 많은 위반들이 나오면 그것을 이행 기간에 맞춰서 보느냐, 아니면 이것이 시청자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느냐, 그런 문제에서 행정청의 입장에서는 시청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즉각적인 처분이 맞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 양한열 방송정책국장

- 아시다시피 지상파나 종편 공히 콘텐츠 투자실적은 당연히 연간 단위로 우리가 체크할 수밖에 없고 여러 가지 다양한 조건들이 있는데 그것이 전체적으로는 주기적으로 연간 단위로 보통 이렇게 해 왔습니다. 그런데 직접적으로 시청자에게 피해를 미칠 수 있는 부분들은 그리고 매달 실적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위반되면 일단 시정명령 내리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효재 상임위원

- 알겠습니다. JTBC는 1건, 채널A는 2건이지요. 본인들 실수인 것으로 그 사실 자체를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MBN은 왜 반복되었지요? MBN 쪽의 설명은 무엇입니까?

○ 진성철 방송지원정책과장

-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부 시스템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건들이 3개월 이상 진행되다 보니까 내부적으로 징계도 있었고, 시스템을 강화하고 있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까지의 발생되었는데 저희가 10월까지 점검해 보니까 8월, 9월, 10월 3개월간 현재 이런 문제는 발생되지 않고 있습니다.

○ 김효재 상임위원

-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의합니다.

○ 한상혁 위원장

- 부가한 조건의 실효성은 확보하되 평가과정에서는 형평성을 상실하지 않을 수 있을 정도로 제도를 정비하고 적용해 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더 추가적인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김창룡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창룡 상임위원

- 저는 재승인 조건은 반드시 지켜달라는 본 위원회가 심사숙고 끝에 내린 조건들이기 때문에 이런 재승인 조건을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이 이루어져야 하고, 이번 위원회의 조치는 적절한 행정조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이런 조치는 존중되기를 기대합니다. 원안에 동의합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안형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안형환 상임위원

- 이번 재승인 조건 위반에 대해서 피심인들은 고의가 아닌 담당자의 단순 실수이고 충분한 재발 방지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협찬고지 조건 위반은 단순 실수라 하더라도 방송프로그램의 상업화를 자초하고 시청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사안입니다. 피심인들은 이번 시정조치를 방송의 책임과 시청자의 권리 보호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하는 계기로 삼기를 당부드립니다. 사무처 원안에 동의합니다.

○ **한상혁 위원장**

-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김 현 부위원장**

- 3개 방송사가 위반한 재승인 조건은 협찬고지를 누락한 것으로 방송에서 협찬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모호한 고지방식과 함께 홈쇼핑 채널과 연계편성으로 시청자를 기만하는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견되고 있습니다. 지상파 재허가, 종편 재승인 조건 부가와 병행하여 법률 개정을 추진하는 등 다방면으로 개선하려고 노력 중인 과제로 빈도수가 낮다, 또는 실수다 라는 것으로 해소될 수 없는 문제라고 보기 때문에 원안에 동의합니다. 실수라는 의견제출을 했는데 시스템을 정비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더 촘촘하게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도 우려하고 걱정하신 바대로 상업방송화되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원치 않은 방향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국회에서도 여러 차례 지적이 된 만큼 협찬고지의 잘못은 엄정하게 처리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원안에 동의합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연계 편성 문제와 관련해서는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연계편성은 객관적 검증 여부가 불분명한 상품의 효능·효과를 방송프로그램에서 소개하고 인근의 홈쇼핑 채널 등에서 해당 제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이것이 국민에게 불편을 단순히 끼치는 정도를 넘어서서 자칫하면 국민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소지가 있는 행위라고 생각되어서 그 중요성에 대해서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습니다. 법 개정안도 제출했고 그리고 법 개정이 안 된 상황에서 재승인 조건으로 부가해서 이런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재 방송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장기간 머물러 있고 진행이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문제의식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시청자의 불평과 피해 예방 등을 위해서 재승인 조건을 부과한 만큼 이 부분이 철저히 지켜져서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국민들의 건강권을 침해할 소지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노력들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보고, 이런 재승인·재허가 조건 이행을 위해서 모니터링을 철저히 하고 연계편성 관련 제도개선 작업에도 박차를 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모두 원안에 동의 하셨기 때문에 이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6. 보고사항

가. 「공익채널 선정 및 장애인복지채널 인정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

○ **한상혁 위원장**

- <보고안건 가> “ 「공익채널 선정 및 장애인복지채널 인정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성철 방송지원정책과장**

-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익채널 선정 및 장애인복지채널 인정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공익채널 선정 및 장애인복지채널 인정에 관한 고시」에 용어 정의를 명확하게 하고, 심사에 필요한 신청서류 요건 완화 및 공익채널 선정 확대 등 개선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고시를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경과를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용어 정의 명확화입니다. 개정사유는 제2조(용어의 정의)에서 공익채널 '신청법인'은 공익채널로 선정 받으려는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설립 중인 회사 등을 포함)으로 정의하고 있으나, 제4조(신청자격에 관한 기본사항)에서 '공익채널 신청인'은 방통위 또는 과기부에 승인·등록된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정안은 공익채널 신청인 및 신청법인에 대한 용어 정의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신청법인' 용어 정의 중 설립예정법인(설립 중인 회사 등을 포함) 내용을 삭제 하도록 한 내용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두 번째는 공익채널 신청서류 요건 완화입니다. 개정사유는 공익채널을 신청하려는 자는 신청서류 및 부속서류 그리고 연도별 송출 실적 자료를 첨부하여 신청을 하고 있는데, 연도별 송출 실적 자료는 3년 자료를 가지고 있고, 공익채널 유효기간은 2년으로 되어 있어서 일치하지 않아서 사업자 혼선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정안에서는 연도별 송출실적 자료와 공익채널 유효기간을 일치시키기 위해 2년간의 송출 실적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신청서류와 같이 제출하는 부속서류의 제출 부수를 최소화합니다. 10부에서 3부로 축소하는 등 신청 서류 요건을 완화하도록 개정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공익채널 선정 확대입니다. 개정사유는 공익채널 선정은 선정심사위원회가 분야별 3개 이내 채널을 선정하고 필요 시 추가 선정하도록 건의하고 있으나 그 외 채널 중 제도 취지에 적합하고 선정기준 점수를 초과한 채널의 경우에는 공익채널 선정 기회가 부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심사위원회는 분야별 고득점 순위로 3개 이내의 채널을 선정하고, 그 외 채널 중 선정기준 점수를 초과한 채널은 예비채널로 지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방통위는 심사위원회가 예비채널로 지정한 채널 중 공익성 및 사회적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공익채널 추가 선정을 결정할 수 있는 규정을 개정안에 마련하였습니다. 네 번째, 공익채널 선정심사위원회의 구성입니다. 현재 선정심사위원회 구성·운영과 관련하여 선정심사위원장 선임에 대한 규정이 미비하고 선정심사위원회는 한시적으로 구성·운영됨에 따라 이에 맞는 규정을 개정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개정안에서는 방통위 위원장이 심사위원 중에서 심사위원장을 지명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 심사위원회 임기 및 연임 규정은 삭제하도록 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향후 일정입니다. 오늘 보고를 접수해 주시면 12월까지 행정예고 및 관계부처 의견조치를 통해 의견조회하고, 12월경에 위원회 의결 및 관보게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붙임>은 고시 일부개정안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한상혁 위원장**

-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질의사항이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효재 상임위원**

- 공익채널 선정 확대 개정안에 보면 심사위원회가 고득점 순위로 3개 채널을 선정하고, 그 외 채널 중 점수를 초과한 채널을 예비채널로 지정하고 그다음에 방통위는 심사위가 예비채널로 지정한 채널 중 공익성 및 사회적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추가 선정을 결정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익채널을 한 번에 3개 이상도 방통위의 결정에 따라

선정할 수 있게 했다는 것입니까?

○ **진성철 방송지원정책과장**

- 그 동안에도 현재 분야별로 각각 3개를 선정하고 필요할 때 1개 정도 더 추가로 선정했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 **김효재 상임위원**

- 그러면 이것이 무엇이 달라진 것이지요?

○ **진성철 방송지원정책과장**

- 기존에는 심사위원들 과반수로 추가 선정을 건의할 수는 있었는데 추가 선정 건의가 없을 경우 65% 점수를 초과한 채널들에 대해서는 아예 예비채널로도 지정이 못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방통위에서 선정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없었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 **김효재 상임위원**

- 우리의 판단에 따라 공익성이 있다면 추가 선정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놨다는 것입니까?

○ **진성철 방송지원정책과장**

- 예, 그렇습니다.

○ **김효재 상임위원**

- 알겠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반대 의견 없으신 것이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 **김창룡 상임위원**

- 동의합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지금 공익채널이 송출되는 개수가 플랫폼별로 어느 정도 되는지 데이터가 있으십니까?

○ **진성철 방송지원정책과장**

- 각 분야에 3개 정도 되어 있고, 법상으로는 1개 이상 하도록 되어 있는데 대부분 플랫폼 사업자들이 3개 전체를 다 송출하고 있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우리가 공익채널로 선정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송출을 통해 이용자들, 시청자들이 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항상 상황을 살펴보면서 지금 IPTV 같은 경우 옛날에 비해 채널의 가용성이 높아졌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공익적

채널들 노출이 많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들도 우리도 고민해야 할 부분인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하나 이상이라고 해 놓고 나머지는 사업자의 자율에 맡기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공익채널들이 더 많이 노출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접수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접수하겠습니다.

8. 기 타

○ 한상혁 위원장

- 오늘 상정된 안건 처리는 이것으로 마쳤습니다. 다른 논의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차기 회의는 12월 1일 오전 10시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9. 폐 회

○ 한상혁 위원장

- 이상으로 2021년도 제51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10시 26분 폐회 】